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6. 13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24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6월 13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김영미

### 가. 제안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의 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%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 (안 제19조의2)
-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(부칙 안 제3조)
  - 종전 2017.12.31. ⇒ 변경 2019.12.31.

### **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**

#### **○ 본 개정조례안은**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규정을 신설하여,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**○ 검토의견으로는**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85%의 감면율만 적용되게 되어 구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조례로 적용여부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함

조례로 적용 시기 등을 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면제의 경우에도 15%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### 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### 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## 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### **8. 기타사항 : 없음**